

『구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1월 16일

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

나. 제안이유

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
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
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·세출 구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-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특별회계의 예산의 일반회계 전용금지(안 제5조)
- 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(안 제6장)

라. 참고사항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
-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·세출 구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 -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특별회계의 예산의 일반회계 전용금지(안 제5조)
 - 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(안 제6장)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토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